

노동쟁의 대상 관련 입법형식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13.(목) 한국경제, “고용부 ‘노동쟁의 기준’ 시행령에 담는다”

-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.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정부 지침을 보강하는 대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. 이달 내 행정 지침을 시행하고, 연내 대통령령(시행령)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.
- ‘N% 성과급 요구’나 ‘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’같은 경영상의 판단을 교섭·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뜻이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입법 체계, 실효성,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음
-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,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간 갈등을 예방·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09)